《공고 제2020 - 22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0년 청년인턴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0년 청년인턴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2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1. 최종합격자 명단

최종합격자에 한해서 개별 유선연락(8월 24일중)하며, 불합격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예비합격자의 경우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합니다.

(수험번호순)

조정감정팀	수탁감정팀	정보운영팀	상담접수팀	부산지원
0138-000015 0138-000033 0138-000085 0138-000094	0139-000023	0140-000022	0141-000034	0142-000016

⇨ 서류제출 기한 내 임용동의서 등의 **필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합격자에게 기회가 부여**되므로 **최종합격자는 정해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비합격자 명단

구 분	지원 분야	순위	응시번호	순위	응시번호
청년 인턴	조정감정팀	예비1	0138-000028	예비4	0138-000061
		예비2	0138-000006	예비5	0138-000049
		예비3	0138-000051	예비6	0138-000100
	수탁감정팀	예비1	0139-000018	예비2	0139-000002
	정보운영팀	예비1	0140-000030	예비2	0140-000003
	상담접수팀	예비1	0141-000036	예비2	0141-000022
	부산지원	예비1	0142-000029	예비2	0142-000047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1개월 이내

3. 최종합격자 안내 사항

□ 제출서류 (필수사항, 원본제출)

- 면접 전 제출한 증명서류의 “원본” 일체
- 임용동의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주민등록등본 2통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1통
- 반명함판 사진(3×4cm) 5매(상반신,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비위면직자 조회용) * 반드시 자필 기재
-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반드시 자필 기재

※ 모든 서류는 최초 모집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제출방법

○ ’20. 8. 27.(목) 15:00까지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우편발송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20층 인재개발팀

□ 임용예정일: ’20. 9. 1.(화)

* 임용일 신규직원 교육 예정에 따라 합격자 전원(부산지원 합격자 포함) 9월 1일 09:00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본원 20층으로 출근

문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채용담당자 : 02-6210-0161 ○ 응대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임 용 동 의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본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0년 직원채용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귀 원의 직원 임용절차에 동의하오며, 신원조회 결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신체검사 결과 또는 본인의 제반사항이 근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이 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하여도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2020.　　.　　.

합 격 자 :　　(서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규채용 (예정)직원을 대상으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규정 위반 여부를 조회하고자,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비위면직자 등인지 여부를 조회하기 위한 본인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3.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용포기로 간주합니다.
   - 취업제한규정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전조회는 비위면직자 등인지 여부 확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 : _____

성　　명 : _____(서명)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있음 □ 없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1, 2, 3-1, 3-2(모두충족시)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해당여부------해당 □ 비해당 □
1, 2, 4-1, 4-2, 4-3(모두충족시)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해당여부------해당 □ 비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